

소규모합병 공고

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식회사 에코비트에너지와 소규모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- 합병방법 : (주)에코비트가 (주)에코비트에너지를 흡수합병
- 피합병회사에 관한 사항
 - 상호 : (주)에코비트에너지
 - 본점 소재지 :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사로 7
- 합병비율 : (주)에코비트 : (주)에코비트에너지 = 1 : 0
- 합병기일 : 2023년 7월 4일
- (주)에코비트와 (주)에코비트에너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
-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사항
 - 행사절차 : 2023년 5월 16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기 양식에 따라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회사로 제출
 - 행사기간 : 2023년 5월 16일 ~ 2023년 5월 30일
 - 행사방법 : 2023년 5월 30일 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제출
※ 주 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55, 10층 (주)에코비트 회계팀 앞
 -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 -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.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(주)에코비트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(주)에코비트와 (주)에코비트에너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명		법인등록번호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23년 5월 일

성명 : (인)

주소 :

2023년 5월 16일

주식회사 에코비트 대표이사 최인호